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

소관부서 : 도로관리과

제정 2024 · 9 · 30 조례 제215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보행자 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횡단보도"란 「도로교통법」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천시에 설치한 것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.
- 2. "안전시설"이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자는 물론 차량 등의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및 음성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"횡단보도 집중조명", "시각안내 보조장치",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, "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", "발광형 표지병" 등의 시설을 말한다.
- 3. "횡단보도 집중조명"이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.
- 4. "시각안내 보조장치"란 보행자에게 녹색신호로 횡단 잔여시간을 알려주거나 적색 신호로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어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사고를 방지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5. "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"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 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을 말한다.
- 6. "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"란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보행신호를 점등하여 보행자에게 추가적인 신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교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.
- 7. "발광형 표지병"이란 도로상에 설치된 노면표시의 선형을 보완하여 야간 또는 악

이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안전시설 설치 조례

천후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해 도로표면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.
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 설치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.
- 제4조(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이천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시설 설치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 다.
 - ②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보행자 안전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.
- 제5조(협력체계) 시장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, 교육지원청,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 여 운영할 수 있다.
- 제6조(예산확보)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"횡단보도 보행자"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7조(안전시설의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, 사고 우려가 높은 곳 및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장소를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.
- 제8조(소음 및 및 공해 방지) 안전시설은 도로의 종류·구조·형태 및 교통량, 주변환 경 등을 고려하여 소음 및 및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시설이 되도록 설치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